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1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 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6년 1월 20일

○ 상정일자 : 제246회 임시회

2006년 1월 2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○ 「공직선거법」의 개정으로 의원정수 4명이 증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,

○ 지방의료원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되고,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것과,

○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함.

4. 주요내용

○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기획행정위원회는 7인을 8인으로, 교육사회위원회는 6인을 7인으로, 산업경제위원회는 6인을 7인으로, 관광건설위원회는 7인을 8인으로 함.

-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지방공사청주·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, 교육사회위원회에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-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조례제명 및 자구를 표기함.

## 5. 검토의견

-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정수 4명이 증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과,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지방공사청주·충주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, 교육사회위원회에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
-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주민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 하도록 “법령제명 띄어쓰기” 및 어문규범 기준에 맞게 조례명과 자구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**붙 임 :**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